

보도일시: 2012.6.15.(금) 배포시

◆ 노사관계실무지원단 팀장 오영민
사무관 김재석
☎ 02-2110-4333

제도 시행 2주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제도가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 - 한국노사관계학회 2012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-

- 최근 우리나라 노사관계제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들 수 있는 ‘근로시간면제제도’의 시행(2010.7.1.) 2주년을 앞두고 현장 실태조사 결과 동 제도가 산업현장에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6.15(금) 개최된 2012년 한국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「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분석 결과」를 발표하였다.
-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첫째, 특히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전임자가 감소하였고, 둘째,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노사관계에 큰 변화는 없으나, 일부 사업장은 노조 활동과정에서 업무를 조정하는 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 주요 실태조사 분석 결과(발제자료) >

- (1)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'10.7월 이후 노조당 평균 유급 종일제(풀타임) 전임자는 2.44명에서 1.53명으로 감소했다. 반면 시간제(파트타임) 전임자는 평균 0.82명에서 1.16명으로 늘었다.
- 파트타임을 풀타임으로 환산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이전 28명에서 도입 이후 1.9명으로 감소하였다. 이는 파트타임을 종전의 대부분 반전임 형태에서 여러 명의 노조간부가 사용하는 부분 전임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.

구 분	면제제도 도입 이전		면제제도 도입 이후			
	노조전임자 수		면제자 수(유급)		무급 노조전임자 수	
	풀타임	파트타임	풀타임	파트타임	풀타임	파트타임
전체 전임자수	2.44	0.82	1.53	1.16	0.30	0.08
사업장 내	2.41	0.72	1.48	1.19	0.25	0.08
상급단체 파견	0.07	0.00	0.01	0.03	0.01	0.00
회사지원 사무보조	0.07	0.02	0.03	0.02	0.00	0.00

- 사업장수로는 전체사업장의 43.2%에서 유급 노조전임자가 감소한 반면, 28.7%의 사업장(특히 300~499인 이하)은 전임자수가 증가하였다.
- 한편,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,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전임자 수를 분석한 결과, 사업장 특성과 전임자 수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.
- (2)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이후 노동조합 활동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, 일부 의미있는 변화도 나타났다.
- 노조활동 변화를 보면, 55.5%가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, 40.7%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. 이중 변화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외부의 상급단체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.

- 한편,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, 대부분(78.0%)이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, 축소(19.4%), 확대(2.3%) 순으로 나타났다.

구 분	변화없음	축소	확대	잘 모름
100.0%	78.0	19.4	2.3	0.3

- 노조 내부의 활동변화의 경우, 노조활동 축소 등 재조정 및 업무합리화가 39.2%로 나타났고, 조합간부의 업무범위 확대 11.8%, 노조 조직 개편 10.5% 등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구 분	노조활동 축소 등 재조정	노조업무 합리화	조합업무 담당확대	노조 조직개편	비전임 간부확대	비전임 간부축소	기타
복수응답	19.9	19.3	11.8	10.5	2.4	5.1	5.1

- 조합비의 경우, 제도 도입이후 노조 전임자 급여 충당 등을 위하여 조합비를 인상하지 않은 사업장이 94.5%로 대부분을 차지하고, 조합비를 인상한 사업장은 불과 5.5%로 나타났다.

(3) 제도도입 이후 노조 전임자수 변화와 사업장의 노사관계 변화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, 상호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.

□ 이체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“근로시간면제제도가 당초의 우려와 달리 빠른 속도로 정착단계에 이르렀고, 복수노조제도와 함께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 있다”고 평가하면서,

- “13년에 걸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결과로 어렵게 낳은 제도를 잘 키워가는 것이 사회경제 주체의 책임있는 자세”이며, “정부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